

#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

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화분야(사회적경제조직) 운영기관 (사협)사람과세상

□ 사업목적

-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은 코로나19 충격 등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 악화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연기·중단하고 있어,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

□ 사업진행 절차

구 분	세 부 내 용	주 관
기 업 참여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- <a href="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/main/index.do">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/main/index.do</a></li> <li>·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누리집 참여신청 바로가기 클릭</li> <li>· 사업참여 신청 작성(참여신청 클릭 해야 완료)</li> <li>· 첨부서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(해당시)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별도 확인서류 제출해야 하며, 해당업종 확인을 위해서, 업종코드 번호 확인해야함(근로복지공단)</li> <li>2) 중소기업확인서 제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</li> </ol> </li> </ul>	기 업
▽		
자격심사 및 안 내	5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, 통보	사람과세상
▽		
지원협약 체결	일 경험지원사업 협약체결(사람과세상에서 준비)	사람과세상 기 업
▽		
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직접채용, 알선 등을 통한 청년 채용</li> <li>·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누리집에 채용자 명단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채용자 명단 통보서, 개인정보동의서(청년), 근로 계약서 사본,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(청년), (해당시)병역증명서 등 근로복지확인서</li> </ul> </li> <li>· 사람과세상에서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</li> </ul>	기 업

	확인 후 참여청년 명단 확정 ·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	
--	---	--



기업 지원금 신청	·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사람과 세상에 기업 지원금 신청 - 지원금 지급신청서 누리집에 작성, 급여대장, 급여이체증, 기업명의 통장사본(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), 교육실시현황 제출 *기업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 선지급 후 소급받는 방식	기 업
--------------	--	-----



기업 지원금 지급	·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	사람과세상
--------------	---	-------

#### □ 지원대상 기업

-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\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또는 중견기업
-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,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①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「벤처기업법」)에 따른 벤처기업
    - \*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, 「벤처기업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‘벤처기업 확인서’로 입증
  - ② 지식서비스산업(별첨참조)
  - ③ 문화콘텐츠산업(별첨참조)
  - ④ 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  - ⑤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(별첨참조)
  - ⑥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
    - \*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(대표자)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    - \*\* 청년(대표자)이라 함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)

## □ 기업요건

-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한다.
-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.

## □ 청년요건

-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(대학생도 참여가능)
  - \*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기록사항)을 확인
  - \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. 다만,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
  - 가.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
  - 나.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
  - 다.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
(다만,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
## □ 지원기간

- 참여기업이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.

## □ 지원한도

-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%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다만, 사업 확대 등 필요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% 이내(최대 30명 상한)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,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.
-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.

## □ 지원수준

-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(최대 월 80만원)와 관리비(인건비의 10%, 최대 월 8만원)로 구성된다.
- 다만, 청년의 주 소정근로시간별로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.

근로시간	총 지급액	인건비	관리비
30시간 이상	88만원	80만원	8만원
20시간 이상	66만원	60만원	6만원
15시간 이상	44만원	40만원	4만원

-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단,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## □ 근로조건 등

- (근로계약) 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(보험적용)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- (근로시간)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
- (임금수준)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
- (멘토지정)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·지도·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·운영
- (교육실시) 청년에 대해 지원기관 동안 업무 지도·교육 등을 실시하고, 월1회 교육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리·제출
-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
  -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 □ 지원제외 청년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  - ②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 또는 일경험사업에 참여중인 자
  - 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  -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   -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  - ⑤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
    - 가.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
    - 나.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
  - 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    - 다만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⑦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

- 다만,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\*한 자는 가능

\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\*\* 단,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□ 지원절차

○ 2020.7.30.~2020.12.31. 참여기업 모집

○ 워크넷 누리집 (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) 참여 신청

□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에 문의

○ 070-4763-0135, 070-4763-0137